

한국무역상무학회지 제33권  
2007년 2월 pp. 121~144

논문접수일 2007.01.31  
논문심사일 2007.02.01  
심사완료일 2007.02.09

## ICC중재의 주요특징과 KCAB중재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신정식\* · 김용일\*\* · 박세훈\*\*\*

- 
- I. 서론
  - II. ICC중재의 주요특징
  - III. KCAB중재의 활성화 방안
  - IV. 결론
- 

### I. 서론

#### 1. 문제의 제기

ICC국제중재법원(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이하 “중재법원”)은 국제상사분쟁의 중재를 통한 해결을 담당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신망이 있는 국제중재기구이다. 중재법원은 1919년에 설립되었으며, 그 본부를 프랑스 파리에 두고 있다. 현재 사용 중인 ICC중재규칙(The Rules of Arbitration)은 그동안 수 차례의 개정을 거쳐 1998년에 최종 개정된 규칙이다.

---

\* 경기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경인여자대학 무역과 강사  
\*\*\* 경기대학교 무역학과 강사

ICC중재의 대표적인 특징은 첫째, “쟁점정리사항서”(Terms of Reference)의 작성(제18조), 둘째, 중재법원의 판정문초안 검토(scrutiny of the award)(제27조), 셋째, 중재비용의 당사자 간 균등분담(equal shares)(제30조)<sup>1)</sup>, 마지막으로 중재인 선정에서의 중재법원의 확인(confirmation) (제9조)이다. 이러한 주요 특징들은 국제중재를 취급하는 대표적인 중재기관인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 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sup>2)</sup>과 미국중재협회(AAA :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sup>3)</sup>의 중재와 차별되는 요소이다. 이러한 ICC 중재의 특징으로 인해 ICC중재법원에 중재를 신청한 건수가 2004년 기준 약 561건에 이르며, 앞으로도 동 법원이 세계 최대의 국제중재기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ICC중재의 주요 특징들을 LCIA, AAA 및 KCAB 중재 규칙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ICC중재의 장점들을 검토한 후, 이를 우리나라 중재법 및 대한상사중재원(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이하; “KCAB”) 중재규칙에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 2. 선행연구의 검토

ICC중재에 관해 연구한 기존의 국내논문이 일부 있지만<sup>4)</sup>, 이들 논문은 ICC

- 
- 1) ICC중재의 3대 특징은, 첫째, “쟁점정리사항서”의 작성(제18조), 둘째, 중재법원의 판정문초안 검토(제27조), 그리고 셋째는 중재비용의 당사자 간 균등예납(제30조) 제도이다(L. D'Arcy et al, Schmitthoff's Export Trade, *The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Trade*, Sweet & Maxwell, 2000, p.494).
  - 2) LCIA는 Corporation of City of London의 주도하에 1892년에 설립된 London Chamber of Arbitration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중재기구이다. LCIA는 그 소재지가 런던이지만 세계 어느 법계 하에서도 포괄적인 상사 중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법세계적인 서비스를 유지하고 국제비즈니스계의 변화에 적응할 필요성에 따라 세계의 주요 거래영역을 커버하는 사용자심의회(User's Councils)를 구성하고 있다. 즉 LCIA European Council, LCIA North American Council, LCIA Asia-Pacific Council 및 LCIA Pan-African Council 등이다.
  - 3) AAA는 소송이 아닌 중재나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각종의 분쟁해결절차를 연구하고 촉진하며 관리하기 위해 1926년에 설립되었다. 근래에 중재가 다른 분쟁해결방법보다 괄목할 정도로 성장하자, AAA는 별도의 부서를 설립하게 되었다. 첫 센터는 1996년 New York에서 그리고 유럽센터는 2001년 6월 아일랜드공화국 더블린에서,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Dispute Resolution ; ICDR)를 개원했다. AAA는 자신의 國際仲裁規則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2000)에 따라 중재를 관리하는 외에 미대륙간 상사분쟁위원회(Inter-American Commercial Arbitration Commission ; IACAC)를 관리하고, UNCITRAL중재규칙에 따라 수행되는 중재에서 필요한 경우 IACAC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중재의 쟁점정리사항서, 임시적 처분 등 개별사안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ICC중재의 주요 특징을 크게 네 가지 요소로 구분하여 연구하였으며, 실제로 이러한 특징들이 다른 국제중재기관 및 KCAB 중재와 차별되는 점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ICC중재의 활성화 요소가 되고 있는 주요특징을 다른 중재규칙과 비교분석함으로써 KCAB중재가 국제화 및 활성화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II. ICC중재의 주요특징

### 1. 쟁점정리사항서

#### 1) “쟁점정리사항서”조항의 제정배경 및 내용

ICC중재규칙 제18조의 “쟁점정리사항서”(Terms of Reference)는 ICC중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중재규칙 하에서도 중재와 관련하여 미리 준비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쟁점정리사항서를 규정한 문서의 작성은 의무화하지는 않는다.<sup>5)</sup>

“쟁점정리사항서”를 규정한 ICC중재규칙 제18조 제1항은 다음과 같다. 즉, “사무국으로부터 중재문서를 수령하는 즉시 중재판정부는 서류를 근거로 하거나 또는 관련당사자의 입회하에서 당사자가 최근에 제출한 서류에 입각하여 “쟁점정리사항서”를 규정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서류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a) 관련당사자의 성명과 인적사항

- 
- 4) “ICC(ICC Rules of Arbitration)중재규칙의 ”위탁조건(Terms of Reference)“에 관한 연구(오원석, 「무역상무연구」, Vol.31 No.3, 한국무역상무학회, 2006), “국제상사주재에서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권에 관한 연구-ICC중재판정사례를 중심으로 -(유병욱, 「국제상학」, Vol.20. No.2, 한국국제상학회, 2005).
  - 5) Y. Derains, & E. A. Schwartg, “A Guide to the New ICC Rules of Arbitration,” Kluwer Law Int'l, 2005. pp.246-247. 다만, 벨기에의 국가중재기관인 CEPANI(Centre pour l' Etude et La Pratique de l'Arbitrage National et International)에서는 “쟁점정리사항서”의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 b) 중재판정에서 발생하는 통지와 통신이 가능한 관련당사자 주소
- c) 당사자 각각의 청구요지 및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청구 또는 반대 청구한 금액을 표시한 각 당사자의 보상청구 요지
- d) 중재판정부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결정할 쟁점 목록
- e) 중재인의 성명, 인적사항 및 주소
- f) 중재장소
- g) 적용할 절차규칙의 세부사항 및 해당되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우의적 중재인(*amiable compositeur*)으로 활동하거나 또는 형평과 선(*ex aequo et bono*)에 따라 판정할 수 있도록 중재판정부에 부여된 권한의 내용 등이다.

위에서 당사자와 중재인의 성명, 주소 및 중재지와는 별도로 “쟁점정리사항서”에 포함될 3가지 광범위한 정보의 범주를 규정하고 있다.<sup>6)</sup>

즉, i) 각 당사자의 청구요지(a summary of parties' respective claims), ii) 쟁점 목록(a list of issues), iii) 적용할 절차규칙의 세부사항(particulars of applicable procedural rules) 등이다. 이 가운데 쟁점목록은 적절하지 않으면 제외될 수 있다. “쟁점정리사항서”的 준비는 당사자와 중재판정부에 중재에 적용될 강행법 조항을 검토하거나 고려할 기회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중재인은 “쟁점정리사항서”에 관련된 중재조항을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중재법원이 “쟁점정리사항서”를 검토할 때 만약 “쟁점정리사항서”가 제18조 제3항에 따라 승인이 필요하다면 특히 중재조항을 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sup>7)</sup>

중재판정부가 결정하여야 할 “쟁점목록”(list of issues)은 당사자의 청구내용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동 규칙 제18조 제1항 d호에 “쟁점”(issues)에 관한 언급은 “초안 작성 시 당사자의 청구에 대한 판결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사실(fact) 및 실질적(substantive) 또는 절차적 법의 문제들”을 확인하려는 뜻이다.<sup>8)</sup>

“쟁점정리사항서”는 원래 당사자의 중재합의를 대신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는 중재인과 당사자 모두의 서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를 지니고 있다. 즉, “쟁점정리사항서”는 관할권에 따라서는 중재회부계약의 한

6) 오원석, “ICC중재규칙의 ”위탁조건(Terms of Reference)“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 연구」, Vol.31 No.3, 한국무역상무학회, 2006, p.85.

7) Y. Derains & E. A. Schwartz, op. cit., p.250.

8) "Practical Guide" prepared by a Working of the ICC Commission, ICC Ct. Bull., Vol.3, No.1(1992), p.35.

형태로 간주될 수 있고 당사자 간 중재합의 존재여부와 유효성에 의문이 있을 경우 중재합의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중재판정부의 관할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쟁점정리사항서”에 서명할 경우 자신의 관할권 주장을 위하여 여기에 서명하길 꺼 릴 수 있다. 만약 한 당사자가 명시적 유보(express reservation)를 전제로 “쟁점정리사항서”에 서명한다면 관할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포기하지 않고 중재를 동의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sup>9)</sup>

“쟁점정리사항서”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관할에 따를 것을 동의하는 것 외에 거기에 나타난 각종의 절차적 문제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로 간주될 수 있다.<sup>10)</sup> 프랑스의 대심원(Court of Cassation)은 프랑스에서 이루어진 국제적인 중재판정에서 만약 중재판정부가 “쟁점정리사항서”的 명시적 조항을 위반한 경우 그 판정은 무효화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sup>11)</sup>

## 2) LCIA · AAA중재와의 비교

ICC중재가 다른 국제중재와 비교하여 가장 특징적인 점은 중재판정부가 작성하는 “쟁점정리사항서”이다. 통상 당사자와 중재인이 여기에 서명하므로서 중재개시 전에 당사자의 주장과 쟁점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순조로운 중재 진행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어, 그 결과 ICC가 대표적인 국제중재기관으로 자리를 잡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LCIA중재규칙과 AAA중재규칙에서는 쟁점정리사항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LCIA중재규칙과 AAA중재규칙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다.

먼저, LCIA중재규칙을 살펴보면,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까지 당사자와 중재인간의 모든 서신교환은 등록관(Registrar)을 경유하여야 하며, 중재판정부가 모든 서신을 중재판정부와 당사자 간에(등록관에게 부분을 동시에 전달하고) 직접 교환하도록 지시하기 전까지는 모두 등록관을 경유하여야 한다.<sup>12)</sup>

9) W. L. Craig, W. W .Park and J. Paulsson,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rbitration, Oceana*, N.Y. 1990, pp.289-290.

10) S. Greenberg and M. Secomb, "Terms of Reference and Negative Jurisdictional Decisions: A Lesson from Australia", *Arb. Int. Vol.18, No.2(2002)*, p.167.

11) Eurodif Case, *Cour de Cassation* (March 8, 1998), Note Jarrosson, *Rev. Arb.*(1989), p.481.

12) LCIA Arbitration Rules, Art. 13.

또한 당사자들은 절차의 진행 방법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이는 첫째, 공정하고 중립적인 절차 수행을 하여 모든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진술 기회와 상대방의 진술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둘째, 분쟁의 최종해결을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불필요한 지연 또는 경비를 줄일 수 있는 적합한 절차를 채택하여야 한다. 이는 중재판정부의 일반적인 의무에 부합되는 것이며 절차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당사자의 요청 또는 수권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이를 서면으로 기록해야 한다.<sup>13)</sup>

서면절차를 살펴보면, 신청인은 등록관으로부터 중재판정부 구성에 관한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에게 사건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즉 사건진술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중재신청서를 사건진술서로 갈음하겠다는 취지의 서면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신청인은 등록관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 답변서에는 전술한 사건진술서상의 사실관계 및 법률적 주장 가운데 인정하거나 또는 부인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상세히 기재하고, 자신이 원용하고자 하는 사실관계 및 법률적 주장을 명시해야 한다. 반대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답변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사건진술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청구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sup>14)</sup>

LCIA중재규칙은 당사자와 중재인간의 모든 서신교환이 등록관(Registerar)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당사자들이 절차의 진행방법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는 조항을 두어 중재판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합의 내용이 위탁조건의 내용처럼 구체적이지 못함은 물론, 실제 중재판정 권한이 있는 중재판정부에 앞서 등록관(Registerar)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절차의 복잡함이 야기될 수 있다.

AAA중재규칙은 중재를 개시하고자 하는 당사자(신청인)는 관리자와 상대당사자(피신청인)에게 동시에 서면으로 중재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중재의 통지에는 분쟁을 중재로 회부하겠다는 요구, 중재조항 또는 중재합의에 대한 인용 중재인의 수 및 중재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관리자(administrator)는 중재의 통지를 즉시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중재절차의 개시를 승인하여야 한다.<sup>15)</sup>

13) LCIA Arbitration Rules, Art. 14.

14) LCIA Arbitration Rules, Art. 15.1 - 15.3

## 2. 중재법원의 판정문초안 검토

### 1) 판정문초안 검토(scrutiny of the award)의 기능

ICC중재에서 중재법원의 기능으로는 중재합의 여부의 결정, 중재인의 선임, 중재지의 결정, 중재인의 수당과 경비의 결정, 쟁점정리사항서의 승인, 중재인에 대한 이의제기 결정, 2인 중재에서 판정권한 부여 및 중재판정의 검토 등이다. 이 가운데, 중재법원이 중재판정부가 내린 중재판정을 검토하는 기능은 중재법원의 주 기능 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중재규칙과 마찬가지로 ICC중재규칙에는 중재판정부가 내린 중재판정에 불복하여 중재에서 진 당사자가 항소할 경우 이를 검토할 2차적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ICC중재의 경우 단독중재인이나 의장중재인이 국제중재인으로 검증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선정되기 때문에 2차적 기관에 의한 검토가 아닌 중재법원에 의한 검토가 이를 대신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ICC중재규칙 제27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중재판정부는 판정문에 서명하기 전에 판정문의 초안을 중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법원은 판정문의 형식을 수정할 수 있으며, 또 중재판정부의 결정의 자유에 영향을 미침이 없이 구체적인 쟁점에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그 형식에 관하여 중재법원의 승인을 얻기 전까지는 어떠한 판정도 내려서는 안 된다”.

중재법원의 “판정문초안 검토(scrutiny of the award) 권한”은 어떤 종재적 사법적 역할보다 감독적(supervisory) 또는 권고적 기능을 반영하고 있다. 중재법원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단지 중재인에게 그 취지를 제안할 수 있을 뿐이며, 중재법원은 중재인에게 그러한 수정제의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할 수 없다. 중재인이 중재법원에 자신들의 판정문을 승인하도록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양자 간 이론적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sup>16)</sup>

---

15) AAA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Art. 2.

16) W. L. Craig et al., op. cit., pp.375-376.

판정문을 검토함에 있어서 중재법원은 “형식(form)에 대한 수정”과 “쟁점(point of substance)에 대한 관심의 환기”를 시킬 수 있다.

판정문 검토의 첫 번째 기능은 중재판정부가 제출한 판정문초안에 형식적 하자가 발견되면 중재법원은 사무국을 통하여 이를 수정하도록 통지하는 것이며, 중재판정부가 다시 제출하는 판정초안에는 수정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만약 중재인이 중재법원이 요구하는 형식적 수정사항을 수용하기를 거절할 경우 중재법원은 이론상 중재인을 교체할 수 있다.<sup>17)</sup> 판정문 검토의 두 번째 기능은 쟁점에 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다. 중재법원은 중재판정부의 법과 사실에 관한 인식을 자신의 최종적인 인식으로 대체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중재판정부의 사실 발견의 착오나 계약조건과 반대되게 당사자의 의무를 결정할 경우 국내법원에서 그 집행이 가능할지 모른다는 것을 예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재법원은 중재판정부의 주의를 환기시켜 이를 심의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즉, 동 법원은 중재문제에 상당한 실무적 경험과 다양한 기술적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국제기구로 하여금 중재판정부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는 문제에 주의를 환기시키므로 이것이 각 당사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판정문 초안의 질을 향상시키는 품질관리적 기능을 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판정검토제도는 의장중재인을 포함하여 모든 중재인들이 ICC중재에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더욱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하여 흡결있는 판정문이 작성되는 것을 피하며 결국은 ICC중재판정이 양 당사자와 집행관할권에서 수락가능성을 높여왔다.

하지만, ICC중재의 장점 중의 하나인 중재법원의 판정문 검토는 중재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자유를 부당하게 간섭하며, 심의과정에서 그들의 비밀유지의무를 침해하며, 나아가 판정초안에 관하여 중재법원과 중재판정부사이에 판정초안을 교환함에 있어 당사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들로부터 정당한 절차를 박탈한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sup>18)</sup>

17) ICC Rules of Arbitration, Art. 12(2); "An arbitrator shall also be replaced on the Court's own initiative when it decides that he is prevented de jure or de facto from fulfilling his functions, or that he is not fulfilling his functions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r within the prescribed time limits."

18) J. Paulsson, "Vicarious Hypochondria and Institutional Arbitration," Yearbook of the Arbitration Institute of the Stockholm Chamber of Commerce(1990). p.96. 터키의 Keban사건에서 터키의 대법원은 이러한 검토제도를 공서양속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Cubin Defense System, Inc / Chamber de Commerce Internationale, Cour de Cassation (Feb. 20. 2001), Note Clay, Rev. arb. (2001) p.511. Compagnie de

ICC중재법원이 아닌 다른 국내·외 중재기관들은 공식적으로 판정문 검토를 하지는 않지만 판정초안을 접수하자마자 사실상 이를 검토하고 만약 필요하다면 관련 문제에 대하여 중재인의 관심을 환기시킨다. 단지 ICC중재의 경우 이러한 판정검토가 동 규칙에 공식적으로 명기되어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결국 중재판정문의 검토제도는 그 유효성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으나 그 절차의 적법성과 효과 및 필요성에 관하여 널리 인식되어 실무상 ICC중재판정의 권위와 신뢰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널리 인식되고 있다.

## 2) LCIA·AAA중재와의 비교

LCIA중재에서 중재판정의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당사자가 합의한 이보다 짧은 기간 내에 일방당사자는 등록관에게 서면 통지 후 중재판정부가 계산상의 오류나 철자상의 오류 또는 그와 유사한 오류를 정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위 요청의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정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정은 별지 메모의 형식을 갖추어야 하며 중재판정부는 그 일자를 기재하고(3인 중재판정부의 경우) 정정에 동의하는 중재인의 서명을 기재해야 한다. 이러한 별지 메모는 중재판정의 일부를 구성한다.<sup>19)</sup>

AAA중재에서는 LCIA와 동일하게 30일 이내에 오류 등을 정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재신청에 포함되어 있으나 중재판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관하여 추가중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한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주장을 검토한 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sup>20)</sup>

---

Constructions Internationales, Compagnie Francaise d'Enterprise et Sté Impregilo v. D.S.I., Supreme Court (Turkey) March 10, 1976 Arbitrator 1980, p.241. 이와 반대로 이러한 판정문 검토는 중재인이 판정초안을 중재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중립적 논평(neutral comment)을 할 기회를 부여하므로 “쟁점”뿐만 아니라 “형식”에 대하여도 착오위험을 줄여주는 긍정적 평가가 대세를 이룬다. M. Rubino-Sammartano, “*International Arbitration Law and Practice*,” 2nd. ed., Kluwer Law Int'l, 2001. p.89.

19) LCIA Arbitration Rules, Art. 27.

20) AAA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Art.30.

### 3. 비용의 균등예납

#### 1) 당사자의 균등예납

ICC중재규칙 제31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중재비용은 중재절차가 개시되는 시점에서 시행중인 보수비율에 따라 중재인의 보수와 경비 및 ICC관리비용과 중재판정부가 선정한 모든 전문가의 보수와 경비 및 중재당사자에 의하여 발생된 상당한 법적비용과 기타비용(reasonable regal and other costs)도 포함된다.”

본 항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결정되는 중재비용의 구성내용을 정의하고 있다. 즉 여기에는 중재인의 보수 및 비용, ICC관리비용, 중재판정부가 선정한 전문가의 보수 및 비용, 그리고 중재당사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상당한 법적 비용과 기타 비용을 말한다.

중재비용은 중재초기에 파리에 있는 ICC중재법원에서 먼저 초기예치비용(advance on costs)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로 하여금 예치하게 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절반씩 예치하게 하며, 반대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다만, 반대청구가 상계대상이라면 중재법원이 이러한 점을 비용산정에서 고려하게 된다.<sup>21)</sup> 중재법원은 수시로 당사자들에게 추가비용의 예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실무에서는 청구금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두 번 혹은 세 번 정도의 추가비용예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피신청인이 예치비용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컨대, 피신청인은 중재의 합의가 없다고 다투는 경우 피신청인은 중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그 주장에 따라 예치비용의 납부를 거부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청인이 예치비용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의 반대청구의 경우에는 반대로 신청인이 납부하지 아니하면 피신청인이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 만일, 예치비용이 완납되지 아니하면, 사무총장은 중재판정부에 15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중재의 중단을 요구하고 그 기간이 지나도록 납부가 되지 아니하면 해당 중재신청 혹은 해당 반대청구는

21) ICC Rules of Arbitration Art. 30.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최근에 와서는 중재절차의 진행을 꺼려하거나 전략적으로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려는 의도에서 예치비용의 납부를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신청인 혹은 반대청구를 한 피신청인은 중재판정부에 잠정조치로써 상대방에게 예치비용의 지급을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각 중재판정부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sup>22)</sup>

ICC중재규칙에서 중재비용과 관련하여 가장 큰 특징은 중재법원이 확정한 예납금을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균등분담(equal shares)하여 납부하는 것이다. 이러한 균등분담은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유발과 중재판정 후에 중재에서 진 당사자가 중재비용의 완납을 망설이는 경우 이에 대한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 2) LCIA · AAA중재와의 비교

LCIA중재에서 LCIA법원이 당사자에게 적절한 비율의 중재비용을 잠정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예납금은 LCIA법원이 이를 보유하며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시로 중재인, 중재판정부가 선정한 전문가 또는 LCIA법원에 지급될 수 있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등록관 또는 부등록관으로부터 필요한 예납금의 납입 확인을 통지 받지 않은 한 절차를 진행해서는 아니 된다.

일방당사자가 LCIA법원이 지시한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LCIA법원은 중재절차의 진행을 위해 상대당사자에게 이를 대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납한 당사자는 동 금액을 불이행 당사자의 채무로써 상환 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 신청인 또는 반대신청인이 필요한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LCIA법원과 중재판정부는 이를 중재신청 또는 반대중재신청의 철회로 간주한다.<sup>23)</sup>

22) 이 부분에 관해서는 중재합의가 중재비용 예납의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중재합의에 중재비용예납의무는 없으며 단지 잠정조치로서 그 예납비용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M. Secomb, "Award and Orders Dealing with the Advance on Costs in ICC Arbitration : Theoretical Questions and Practical Problems" published in 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Bulletin Vol. 14/No.1 - Spring 2003, PP.59-70.

23) LCIA Arbitration Rules, Art. 24.

AAA중재에서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에서 중재비용을 확정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사건의 정황을 고려하면서 합리적이라고 결정하는 경우 당사자간에 중재비용을 분담시킬 수 있다. 특히, 관리자(administrator)는 신청인에게 제31조에 규정된 비용에 대하여 적절한 금액을 예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들에게 추가 예납을 요청할 수 있다. 예납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의 전액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 관리자는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 당사자 가운데 1인 또는 다른 이가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절차의 정지(suspension) 또는 종결(termination)을 명할 수 있다.

중재판정이 내려 진 후, 관리자는 수령한 예납금에 대하여 당사자들에게 정산을 해주고 남은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4. 중재인의 선정

##### 1) 중재인 선정 및 확인

'중재는 중재인과 같다(The Arbitration is as good as the Arbitrator)'라는 말이 있듯이 중재에서 중재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들은 중재인의 자격과 권한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한 후 중재인 선정에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중재인은 당사자 자치의 원칙을 존중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선정된다. 당사자는 중재계약에 중재인 선정 방법을 합의하여, 이 방법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sup>24)</sup> 또는 각 분야의 전문가<sup>25)</sup>가 중재인으로 선정될 수 있으며, 양 당사자에 의해 선정된 두 명의 중재인이 전문가이고, 변호사가 그 중재사건의 의장이 되는 것이 효율적이다.<sup>26)</sup> 두 명의 중재인은 중재판정부에 기술적인 전문성(technical expertise)을 제공하며, 의장중재인(chairman)은 중재절차가 정확히 이행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관련 중재

24) 변호사에는 사무변호사(solicitors), 법정변호사(barristers), 회사변호사(company lawyers), 학자(academics)를 포함한다.

25) 예를 들어 전문가(experts)에는 기술자(engineers), 소프트웨어전문가(software specialists), 건축전문가(building experts) 등이 있다.

26) H. van Houtte, *The Law of International Trade*, Sweet & Maxwell, 2002, p.401.

인 선정에 대해, 예를 들어 그의 명성, 솔직함, 판단력, 국적, 전문적 경험, 유용성(availability)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sup>27)</sup>

특히, 중재인의 선정과 관련하여 ICC중재에서 중재법원의 가장 큰 역할은 중재인의 선정과 확인이다. 중재인의 선정은 다른 중재규칙과 동일하지만, 확인(confirmation)은 ICC중재체계에서 구별되는 특징이다.

사실, 다른 중재기관에서 중재인을 선정하는 경우, 그들의 규칙은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이 중재인을 지명하고, 공동중재인 또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확인되어진다.<sup>28)</sup>

ICC중재에서는 중재인을 확인하거나 선정함에 있어 중재법원은 예상중재인의 국적, 거주지, 당사자나 다른 중재인이 소속된 국가와의 기타관계, 등 규칙에 의한 중재수행 가능여부와 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중재법원이 단독중재인 또는 중재판정부의 의장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 중재법원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ICC국내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중재법원이 그 추천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위의 국내위원회가 중재법원에 의하여 지정된 기한 내에 추천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재법원은 위의 국내위원회에 반복하여 추천을 받거나, 또는 다른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국내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sup>29)</sup>

ICC 중재규칙에 의하면 분쟁은 단독중재인 또는 3인의 중재인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중재인의 수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 중재법원은 분쟁이 3인의 중재인을 선정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중재인(sole arbitrator)을 선정하여야 한다. 국제상사중재에 있어서 단독중재인인 경우에는 통상 변호사가 중재인으로 선정된다.<sup>30)</sup>

분쟁이 3인의 중재인에게 위탁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중재신청서 및 답변서를 통하여 각각 1인의 중재인을 지명하여 중재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당사자 일방이 중재인을 지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재법원이 이를 선정한다.

27) A. de Fina, "The party appointed arbitrator in international arbitrations-role and selection", (1990) 15 Arb. Int. 381.

28) Y. Derains & E. A. Schwartz, op. cit., p.154.

29) ICC Rules of Arbitration, Art. 9.1-9.3.

30) 국제상사중재의 법적 특성상 대부분의 ICC중재인들은 변호사이거나 대학교수들이다. W. Michael Reisman · W. Laurence Craig · William Park · Jan Paulss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Case, Materials & Note on the Resolution of International Business Dispute, The Foundation Press Inc., 1997, p.547.

중재판정부의 입장으로 활동할 제3국의 중재인은 당사자 쌍방이 선정절차에 대해 별도로 합의하지 않은 경우 중재법원이 선정한다. 당사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제3의 중재인을 지명한 경우 ICC중재규칙 제9조에 의거 중재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관련당사자나 중재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그러한 절차에 의한 선정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중재법원은 제3의 중재인을 선정한다.<sup>31)</sup>

이처럼 중재인 선정에 있어서 ICC중재규칙은 중재법원의 “확인”(confirmation)제도를 둘으로써 다른 중재규칙에 비해 보다 공정하고 우수한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다.

## 2) LCIA · AAA중재와의 비교

LCIA 중재규칙에 의하면 중재판정부는 1인 또는 1인 이상의 중재인을 모두 포함하며 남녀는 불문한다(법원장, 부원장, 법원의 구성원, 등록관, 부등록관, 전문가, 중인, 당사자, 법률대리인의 경우에도 그와 같이 해석한다).

LCIA법원은 단독으로 중재인을 선정할 권한을 가지며 당사자가 합의한 선정 기준과 방법을 고려하여 해당 중재인을 선정한다. 중재인을 선정함에 있어 당해 거래 및 분쟁의 성질과 정황, 당사자의 국적, 소재지 그리고 당사자들이 사용하는 언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인 중재판정부의 경우 의장중재인(당사자 선정에 의한 중재인이 아닌)은 LCIA법원이 이를 선정한다.<sup>32)</sup>

중재합의에서 각 당사자가 중재인을 지명키로 하고 당사자의 수가 3인 이상인 경우에 각 당사자가 중재판정부 구성에 있어 각각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입장에 대표하는 것으로 당사자 전원이 합의한 경우가 아니면, LCIA법원이 당사자의 지명을 고려하지 않고 단독으로 중재판정부를 선정한다.<sup>33)</sup>

AAA 중재규칙에 의하면 중재인의 수는 만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한다. 다만 관리자(administrator)가 사건의 규모, 복잡성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3인의 중재인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up>34)</sup>.

또한 중재인의 선정에 있어서 당사자들은 중재인 선정 절차를 상호 합의로

31) ICC Rules of Arbitration, Art. 8.

32) LCIA Rules, Art. 5.

33) LCIA Rules, Art. 8.

34) AAA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Art. 5.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있는 경우 관리자에게 합의한 절차를 통지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은 관리자의 도움을 받거나 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상호 합의로 중재인을 지정할 수 있다. 합의로 중재인이 지정되면 당사자는 그 사실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관리자는 본 규칙에 따라 중재인에게 선정 통지를 하여야 한다.

중재절차 개시 후 45일 이내에 중재인 선정 절차 또는 중재인 지정에 관한 당사자들의 전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관리자는 일방당사자의 서면 요청에 따라 중재인(들)을 선정하고 의장중재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중재인 선정 절차에는 합의하였으나 절차에서 정한 기한 내에 모든 선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관리자는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동 절차에서 규정한 남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위 선정을 수행함에 있어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적절한 중재인을 선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당사자들과 다른 제3국적의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중재절차의 개시 후 45일 이내에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재의 통지에서 2인 또는 그 이상의 신청인을 명시하고 있거나, 2인 또는 그 이상의 피신청인을 명시하고 있으면 관리자가 중재인 전원을 선정한다.<sup>35)</sup>

### III. KCAB 중재의 활성화 방안

#### 1. 쟁점정리사항서의 수용

“쟁점정리사항서”는 ICC중재가 다른 국제중재와 비교하여 가장 특징적인 점으로, 통상 당사자와 중재인이 여기에 서명하므로 중재개시 전에 당사자의 주장과 쟁점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순조로운 중재진행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쟁점정리사항서의 활용은 ICC중재법원이 대표적인 국제중재 기관으로 자리를 잡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여겨진다.

---

35) AAA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Art. 6.

KCAB중재규칙에서 이와 유사한 조항으로, 중재신청서와 답변서를 비교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성격이 다르다. 왜냐하면 ICC중재규칙에서 "쟁점정리사항서"는 중재판정부가 중재진행을 신속하게 하고 쟁점사항에 대한 정리를 통하여 중재절차를 원활하게 진행시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당사자들과 중재판정부에게 쟁점을 명확하게 하며, 판정의 범위를 분명히 하여 중재판정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KCAB중재규칙에서의 신청서와 답변서는 중재판정부의 일반적 권한 내에서 일방 당사자로 하여금 자신의 청구나 방어의 근거를 위해 제출하는 문서이다. 게다가,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의 요구에 의해 다른 증거요약문을 제출 할 수도 있고, 일방당사자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내에 문서 및 기타 증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즉, 중재당사자들의 중재신청과 이에 대한 피신청인으로써의 서로간의 입장을 정리하는 서류이다.

요컨대, 우리나라 중재법 및 KCAB 중재규칙에는 "쟁점정리사항서"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이에 대한 장점들<sup>36)</sup>을 적극 수용한다면, 우리나라중재의 국제화를 위하여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 2. 중재판정문초안 검토의 실무상 활용

ICC중재에서 중재법원에 의한 판정문초안 검토는 ICC중재법원의 중요한 기능으로, 중재판정부에 대해 쟁점에 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중재판정문 초안의 형식을 수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ICC중재법원은 중재판정부의 결정을 심의하도록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실무상 중재판정부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킨다. 또한 이것이 각 당사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판정문초안을 다시 검토함으로써 판정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36) "쟁점정리사항서"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첫째, 중재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당사자와 중재인에게 절차와 준거법, 중재언어 및 중재를 위한 일정과 같은 문제를 확인하고 합의할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당사자와 중재인에게 중재에서 논의하는데 필요한 실체적 문제를 확인할 추가적 가능성을 제공한다. 셋째, 당사자들에게 모든 청구와 대응청구를 제19조에 따라서 제기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한다. 넷째, 최종적으로 내려진 중재판정이 적정하는 것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재판정부의 위임의 정확한 범위를 한정하도록 한다. "Practical Guide" prepared by a Working of the ICC Commission, ICC Ct. Bull., Vol.3, No.1(1992), p.116.

하지만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중재법원이 다시 함으로써 이미 내려진 중재판정에 대하여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할 수도 있지만 ICC중재규칙 제27조에서 중재법원의 역할을 판정문의 형식에 대한 수정까지로 한정함으로써 판정의 종국성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판정문초안 검토 제도는 의장중재인을 포함하여 모든 중재인들이 ICC중재에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더욱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하여 흡결 있는 판정문이 작성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결국은 ICC중재판정이 양 당사자와 집행관할권에서 수락가능성을 높여왔다.

결국 중재판정의 검토제도는 그 유효성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으나 그 절차의 적법성과 효과 및 필요성에 관하여 널리 인식되어 ICC중재판정의 권위와 신뢰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KCAB 중재규칙에서는 판정문 검토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 및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3. 중재비용균등예납의 필요성

ICC중재에서 중재비용 예납금의 결정은 중재법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규정은 일반적인 국제중재규칙의 공통된 특징이다. 하지만, 중재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양 당사자에게 중재비용을 균등하게 분담시키는 것이 특이하다.

KCAB중재규칙상의 중재비용은 중재판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부담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다만, 중재판정에서 중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느 일방 당사자 또는 쌍방 당사자의 부담으로 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의 균등부담으로 한다.<sup>37)</sup>

ICC중재에서 활용되고 있는 중재법원에 의한 균등분담은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유발과 중재판정 후에 중재에서 진 당사자가 중재비용의 완납을 망설이는 경우 이에 대한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KCAB중재에서도 중재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중재비용의 일부를 양 당사자에게 균등예납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37) KCAB중재규칙 제61조.

#### 4. 중재인 확인절차의 도입

국제상사분쟁에서 당사자들이 중재를 선택하는 중요한 요소는 중재절차의 신속성, 경제성, 비공개성 뿐만 아니라 분쟁사건에 능숙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ICC중재규칙에서 중재인 선정에 관한 규정은 다른 중재규칙과 동일하나 중재인 선정을 엄격하게 하기 위해 “확인”이라는 절차를 둠으로써 더욱 공정하고 질 높은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다.

특히, ICC중재에서는 중재인을 확인하거나 선정함에 있어 ICC중재법원은 예상중재인의 국적, 거주지, 당사자나 다른 중재인이 소속된 국가와의 기타관계, 및 중재수행 가능여부와 능력 등을 고려한다.

이에 반해, KCAB중재규칙에서 중재인 선정은 당사자 자치의 원칙을 존중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선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중재인의 선정 후 중재인의 자격에 하자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중재인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하자가 있는 경우 중재인을 기피(challenged)할 수 있다.<sup>38)</sup>

하지만, 중재판정부에 대한 기피신청과 이에 대한 판단 등에 따르는 절차로 인해 중재판정이 내려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KCAB중재에서도 ICC중재와 같이 중재인의 확인 절차를 둠으로써 중재인선정과정에서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38) 한국중재법 제13조.

## IV. 결론

ICC중재의 대표적인 특징은 중재판정부가 작성하는 “쟁점정리사항서”, 중재법원의 “판정문초안 검토”, “비용의 균등예납” 및 중재인 선정 시 “중재인확인”제도이다.

먼저, 쟁점정리사항서에는 당사자의 주장요지나 관련 당사자의 보상청구요지, 중재판정부가 결정할 쟁점사항, 당사자 및 중재인의 인적사항 및 적용할 절차규칙 등이 명기된다. 중재판정부는 미리 “쟁점정리사항서”와 잠정적 중재일정을 마련하여 당사자의 서명을 받거나 당사자에게 통보하므로 중재과정에서 제기될 많은 문제들을 사전에 조율할 수 있고, 진행일정도 사전에 마련하므로 중재가 원만하고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며, 그러한 제도가 계속 존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ICC중재의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중재법원의 판정문초안의 검토이다. 검토의 내용은 “형식에 대한 수정”과 “쟁점에 관한 관심의 환기”로, 내려진 판정문이 형식면에서 하자가 없는지 그리고 쟁점정리사항서에 명기된 쟁점을 모두 망라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렇게 하므로 세계 각국의 중재인이 참여하여 내린 판정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집행지국의 강행법규와 모순이 없는지도 사전에 발견할 수 있다. 결국 이와 같은 제도는 ICC중재판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관련당사자에게도 중재판정이 공정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신하도록 한다.

또한, 중재비용의 예납제도는 중재법원 사무국의 사무총장이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부담시키는 임시예납과 중재법원이 결정하는 예납금으로 나눌 수 있으며, 후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특히, 이러한 균등분담은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유발과 중재판정 후에 중재에서 진 당사자가 중재비용의 완납을 망설이는 경우 이에 대한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은 물론 중재진행에 필요한 자금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하므로 비용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고 중재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끝으로, 중재인의 선정과 관련하여 중재법원의 가장 큰 역할은 중재인의 선

정과 확인이다. 중재인의 선정은 다른 중재규칙과 동일하지만, 확인은 ICC중재체계에서 구별되는 특징이다. 이처럼 중재인 선정에 있어서 ICC중재규칙은 중재법원의 “확인”(confirmation)제도를 둘으로써 다른 중재규칙에 비해 보다 공정하고 우수한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KCAB도 이러한 ICC중재의 주요 특징들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수용한다면 보다 국제화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ICC중재규칙의 일부조항을 우리나라중재법 및 중재규칙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参考文献

- 오원석, "ICC중재규칙의 위탁조건(Terms of Reference)"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Vol.31 No.3, 한국무역상무학회, 2006.
- Craig, W. L et al,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rbitration", Oceana, N.Y. 1990.
- Cubin Defense System, Inc/Chamber de Commerce Internationale, Cour de Cassation (Feb. 20. 2001), Note Clay, Rev. arb. (2001).
- D'Arcy et al, L., Schmitthoff's Export Trade, "The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Trade", Sweet & Maxwell, 2000.
- Derains Y. & Schwartg E. A., "A Guide to the New ICC Rules of Arbitration," Kluwer Law Int'l, 2005.
- Eurodif Case, Cour de Cassation(March 8, 1998), Note Jarrosson, Rev. arb.(1989).
- Fina A. de, "The party appointed arbitrator in international arbitrations-role and selection", (1990) 15 Arb. Int.
- Greenberg. S and Secomb, M., "Terms of Reference and Negative Jurisdictional Decisions: A Lesson from Australia", Arb. Int. Vol.18, No.2(2002).
- Houtte, H. van, "The Law of International Trade", Sweet & Maxwell, 2002.
- Michael W Reisman et al,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Case, Materials & Note on the Resolution of International Business Dispute", The Foundation Press Inc, 1997.
- Paulsson J., "Vicarious Hypochondria and Institutional Arbitration", Yearbook of the Arbitration Institute of the Stockholm Chamber of Commerce(1990).
- "Practical Guide" prepared by a Working of the ICC Commission, ICC Ct. Bull., Vol.3, No.1(1992),
- Rubino-Sammartano M., "International Arbitration Law and Practice," 2nd. ed., Kluwer Law Int'l, 2001.
- Secomb M, "Award and Orders Dealing with the Advance on Costs in ICC Arbitration : Theoretical Questions and Practical Problems"

published in 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Bulletin Vol.  
14/No.1 - Spring 2003.

AAA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2000)

LCIA Arbitration Rules(1998)

ICC Rules of Arbitration(1998)

KCAB 중재규칙(2004)

한국중재법(2000)

## ABSTRACT

### A Study on the Main Characteristics of ICC Arbitration and the Ways to Expand of KCAB Arbitration

Sin, Jung Sik · Kim, Yong Il · Park, Se Hun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has been the world's leading organization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 resolution. Established in 1923 as the arbitration body of ICC, the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has pioneered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s it is known today.

The 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is the world's foremost institution in the resolution of international business disputes. While most arbitration institutions are regional or national in scope, the ICC Court is truly international.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ir advantages and to introduce main contents provided in ICC Rules of Arbitration as follows ;

First, before the actual merits of the case can be addressed, the Arbitral Tribunal must first draw up the Terms of Reference. The Terms of Reference should include the particulars listed in the ICC Rules. Apart from the full names and description of the parties and arbitrators, the place of arbitration and a summary of the parties' respective claims, they contain particulars concerning the applicable procedural rules and any other provisions required to make the Award enforceable at law

Second, the Scrutiny is a fundamental feature of ICC arbitration and is one that distinguishes it from the other major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The scrutiny system has two aspects ; the first is to identify or modify the defects of form, while the second is to draw the arbitrators' attention to points of substance.

Third, as soon as practicable, the Court fixes an advance on costs intended to cover the estimated fees and expenses of the arbitrators, as well as the administrative expenses of ICC. Specially, the advance on costs fixed by the Court shall be payable in equal shares by the Claimant and Respondent.

Finally, the parties are also free to select the arbitrator or arbitrators of their choice. The Court or the Secretary General confirms arbitrators nominated by the parties.

Taking a step forward, to upgrade the quality of the award of KCAB, it is desirable to consider how to incorporate the main contents of the ICC Arbitration into Korea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Key words : Terms of Reference, Scrutiny of the Award,  
Equal Shares, Confirmation of the Arbitrators